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9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이정애, 한근수, 정현미,
김동훈, 원주영, 김상수,
박경원, 이상기, 김영실,
이진환, 전해연, 이수련

1. 제안 이유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기록의 표준화와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주민참여감독자”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정의

나. 공사의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 시공 문제 통지

- 감독공무원의 조치

-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및 제출

다. 주민참여감독자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라.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서식(별지 1호·별지 2호서식)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감독공무원”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16조(공사의 감독) 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불법·부당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감독공무원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

우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기간 중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공사별 감독조서(별지 1호서식)와 감독일지(별지 2호서식)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조 및 제10조”를 “제7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각각 “제10조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사”를 “영 제63조에 따라 공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
 2.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방법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참여감독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 별지 1호서식과 별지 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공사 감독일지(제16조제3항 관련)

공사명 :	주민참여감독자 :	(서명 또는 인)
감독일시 : 년 월 일		

주요감독사항 _____

구 분	시 간	업 무 내 용	시정·건의사항
			공사감독공무원 확 인

<작성 및 기재요령>

1. 상단에 주요감독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2. 근무시간별로 검측·품질시험·행정 등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시공과정의 개선,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등에 대한 의견은 상세히 기록한 후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사비의 증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 건의하여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u>1. “주민참여감독자”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u></p> <p><u>2. “감독공무원”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u></p>
<p><u>제2조 ~ 제5조</u> (생략)</p>	<p><u>제3조 ~ 제6조</u> (현행 제2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p>
<p><u>제6조(회의) ①</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u>제3조</u>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p> <p>② ~ ④ (생략)</p>	<p><u>제7조(회의) ①</u>-----</p> <p>----- <u>제4조</u>-----</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7조(소위원회) ①</u>위원회는 <u>제3조</u>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p>	<p><u>제8조(소위원회) ①</u>----- <u>제4조</u></p> <p>-----</p> <p>-----</p> <p>-----</p> <p>-----</p> <p>-----</p>

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의 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 제14조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조 및 제11조-----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①-
--- 제9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3항-----

-----.

② 제10조제3항-----

-----.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18조(교육) 시장은 공사 착공

제16조(공사의 감독) ①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 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불법· 부당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감독공무원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등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기간 중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공사별 감독조서(별지 1호서식)와 감독일지(별지 2호 서식)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20조(교육) ① -- 영 제63조에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 (생 략)

<신 설>

따라 공사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참여감독자의 역할
2.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작성 방법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 참여감독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별지 1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제16조제3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사명		시공사 (계약자)	
공사위치 (주소)			
공사기간		참여감독 기간	
사업부서	공사감독 공무원	성명	(인)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감독상황	근무일수	총 일	
	감독일지	"별첨(별지 2호서식)"	
<p>「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기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로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참여감독자 (서명 또는 인)</p>			
남양주시장 귀하			
※ 계과번호		은행명	예금주

<신 설>

[별지 2호서식]

주민참여공사 감독일지(제16조제3항 관련)

공사명 : _____ 주민참여감독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감독일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주요감독사항 _____

구분	시간	업무내용	시정·건의사항
			공사감독공무원 함인

<작성 및 기재요령>
1. 상단에 주요감독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2. 근무시간별로 검측·품질시험·형질 등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시공과정의 개선,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등에 대한 의견은 상세히 기록한 후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사비의 증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 건의하여야 합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주민참여감독자, 감독공무원의 용어 정의,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및 감독일지 서식 추가 신설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행정국 회계과장 홍은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9. 13.>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